

미래캠퍼스 교내 동아리 및 소모임의 운동장 사용 기준

미래평생교육원

1. 목적: 「미래캠퍼스 교내 체육시설 운영 내규」 제6조 제2항 ‘교내 동아리 및 소모임의 운동장 사용 기준’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원주연세의료원 제외)
2. 용어 정의
 - 가. 교내 동아리: 원주학생복지처, 원주교수평의회, 원주직원노동조합이 인정하는 동아리
 - 나. 소모임: 교내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, ‘연세대학교 공간대관시스템’ 에서 연세대학교 연세교육센터의 교내 등록단체로 승인된 소규모의 모임
 - 다. 운동장: 「미래캠퍼스 교내 체육시설 운영 내규」 제2조에 따른 종합운동장(축구장, 육상트랙, 풋살장, 족구장, 농구장)
3. 사용 기준
 - 가. 매학기 초 교내 동아리는 운동장 사용을 희망하는 요일, 시간을 정하여 미래평생교육원 행정팀장(이하 팀장)에게 정기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. 팀장은 이를 파악하여 정기대관을 통보한다.
 - 나. 교내 동아리의 정기대관은 「미래캠퍼스 교내 체육시설 운영 내규」 제4조 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RC체육활동보다 우선할 수 없다.
 - 다. 교내 동아리 간 희망 요일, 시간이 겹치면 팀장의 주관 하에 교내 동아리 간 협의를 통해 정기대관을 배정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팀장이 임의로 통보할 수 있다.
 - 라. 가장 많은 대관을 희망하는 월~목, 18:00~22:00(이하 피크타임) 중 정기대관 최대 시간은 2시간으로 정한다.
 - 마. 피크타임 중 최소 2시간은 소모임 및 기타 단체가 대관한다.
 - 바. 교내 동아리의 운동장 사용 시 「미래캠퍼스 교내 체육시설 운영 내규」 제9조에 근거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사. 팀장은 대관 시 안전계획 실행 여부를 확인하여 대관한다.